

개정 산안법 시행('20.1.16.자)에 따른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04.



고용노동부



발 간 사



산업구조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고,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으로 수급인(하청) 노동자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20.1.16.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급인가 제도로 허용되던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은 사내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미리 안전보건조치를 한 후 승인을 받아야 사내 도급이 가능합니다.

도급사업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적으로 지휘·관리하는 도급인이 자신의 노동자는 물론이고,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수록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그동안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자료집을 통하여 도급사업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이 명쾌하게 설명되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및 수급인 노동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 4.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 영 만



목 차

I

제도 개요	03
-------	----

II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05
-------------	----

III

세부사항	07
------	----

01. 도급인이 해야할 일	08
02. 수급인이 해야할 일	14
03. 도급승인 관련 이의제기 절차	16
04. 도급금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7

붙임1 /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관련 Q&A	21
-----------------------------	----

붙임2 / 관계 법령 및 서식	61
------------------	----

붙임3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세부내용	73
---------------------------	----

붙임4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부분 발췌)	77
------------------------------	----

붙임5 / 안전수준평가 세부기준	85
-------------------	----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

I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개요



I.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개요

목적

유해 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운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외부 업체 노동자가 들어와 일하다 사고가 많은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으로 하여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도급금지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은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일시·간헐 작업,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예외 인정

*도급,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급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도급승인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취급형태 중 도급 시 위험성이 큰 작업을 승인 대상으로 정하였음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안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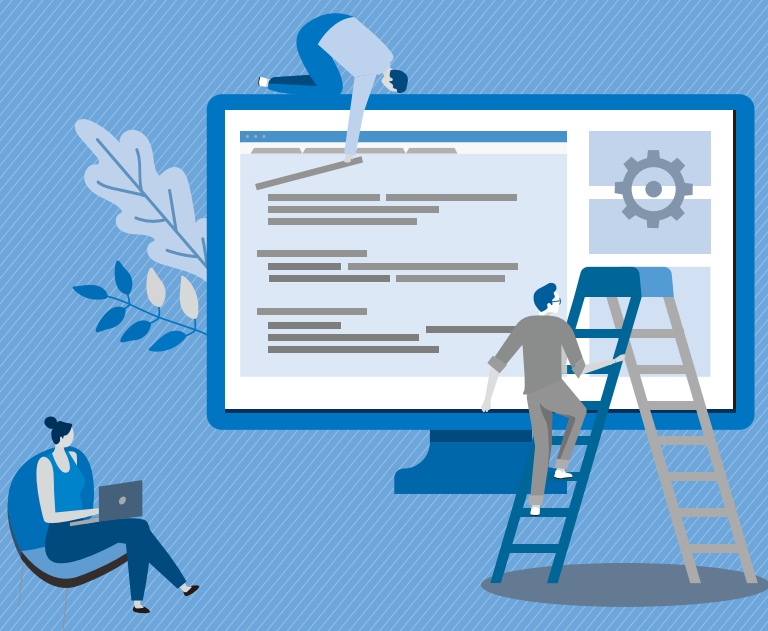
● 예외규정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도급승인의 예외를 인정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

II

지침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Ⅱ. 지침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기본방향

도급제한 |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해석기준 마련
안전·보건평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방법, 내용, 수행기관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01

도급인의 의무 | 도급금지 대상 작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미리 안전보건평가를 받은 후에 승인 신청해야 함

02

도급금지 예외 기준* | 도급금지의 예외로서 일시·간헐 작업과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법 제58조제2항)

03

도급승인 예외* 기준 | 도급승인 예외 요건으로서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였다는 증명방법 및 지방관서 확인 절차 등 마련(시행령 제51조제1호)

*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이나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신고한 경우 예외

04

긴급한 도급 절차 간소화* | 도급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 대한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80조제2항)

* 도급승인 신청 시

① 도급대상 작업 공정 서류, ②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만 제출 가능(공정 서류, 안전보건평가 생략)

0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시행규칙 제76조)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 평가 수행기관, 공단의 기술사항 확인 등을 명시

06

도급승인 대상 작업 하도급 금지의 구체적인 내용 정함

07

도급승인 신청이 처리기한 내에 승인되지 않을 경우(시행규칙 제77조제4항) 이의 제기 절차 마련

08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10억원) 부과 시 위반 기간 및 횟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노력도, 산재발생 빈도 고려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

III

세부사항



Ⅲ. 세부사항

01

도급인이 해야할 일

■ 도급금지 대상 작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도급금지 대상 작업*은 도급인이 직접 고용한 인력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도금,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

- (예외) 해당 작업을 수행할 인력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일시·간헐 작업,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 일시·간헐 작업 도급금지 예외의 기본원칙은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일시적 작업은 그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 상시인력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간헐적 작업은 작업의 수요는 예측이 되나, 오랜 기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여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경우임

-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일시적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으로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제한
- '전문적 기술'이란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임이 특허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로 해석
- '필수 불가결'이란 해당 기술이 없다면 도급인의 전체 사업 중 도급과 관련된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로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시·간헐 작업은 갑작스런 주문증가, 생산계획 변경 등 예측이 불가능한 요인으로 발생한 업무로서 기존 인력으로 대처가 어려운 경우로 봄니다.(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간헐 작업의 예는 허가대상물질 비소화합물 촉매 교체 작업으로 10개월마다 하는데,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통상 작업기간은 40일이 소요되어 해당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상시 고용하기 어려움이 인정됨(황화니켈 촉매 교체는 4년마다 함)

- '전문적 기술'이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지식재산으로 지정·고시·공고·인증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 '필수 불가결'이란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여 그것이 없다면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업주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일시·간헐 작업으로 인정되면 도급이 가능하지만,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심청구절차) 제도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 기술’인지 여부와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지방관서의 판단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의 재심청구 시 지방관서는 위원회(노사가 추천한 전문가 포함)를 구성하여 재심절차를 진행합니다.

■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미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은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급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도급승인 대상은 ①도급금지 대상 작업이지만,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와 ②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 도급승인을 받으려면 도급승인 신청서에 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① 법 제5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 도급승인 신청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하므로 신청인은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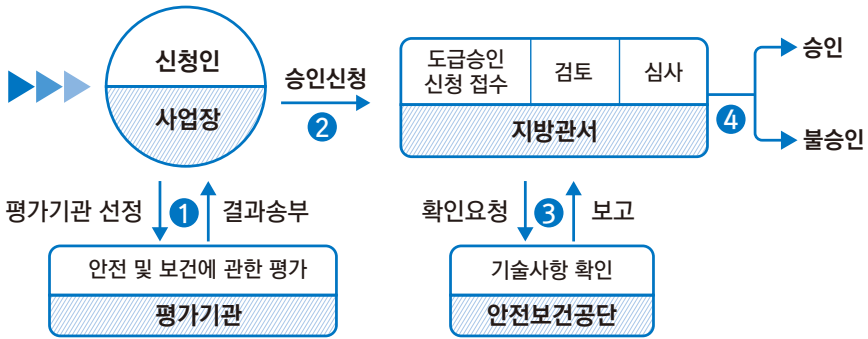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평가, 유해·위험요인 측정 및 분석,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 적정성,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적정성 평가

** 현재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

협회, 한국산업보건연구소, 한국기술안전협회, 한국산업위생협회, 한국안전환경과학원, 건강안전연구소, 안전보건진흥원 10개가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속 추가 지정 중임

- 신청인과 평가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와 관련한 평가대상(장소·직업 등), 평가일정, 평가수수료* 등에 대해 협의 및 평가계약 체결

* 평가수수료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9호(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에 따름



- 관할 지방관서는 신청서류 내용, 안전·보건평가결과 및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사항 확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급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 도급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은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관서는 이의신청일부 7일 이내 승인 여부 재검토)

*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하고, 이의신청서(별도 양식 없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시행방안

- (평가항목) ①종합평가(안전·보건평가), ②안전평가, ③보건평가로 구분

종 류	평 가 항 목 (시행규칙 별표 12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종합 평가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4.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 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제2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및 제3호 중 안전 관련 사항, 제5호의 사항
보건 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 중 바목의 사항, 제3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 작성,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 첨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평가 외에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도 평가*하도록 함

* 종합평가 항목 5호: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건강검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더라도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승인받지 않고 도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거 방법** | 배관·설비 등 화학물질 제거(Draining) → 초순수·용수 및 질소 등을 사용 잔여물, 치환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배관·설비를 세척 및 치환해야 합니다.
- **측정 방법** | 최소한 다음의 측정기준에 따라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합니다.



1) 직접 물질에 접촉시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 ① 해당 화학물질 가스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 必) 준비
→ 질소 등 불활성 기체로 치환하는 경우 산소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 必) 추가 준비
- ②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하여 깊이 측정
* 채기관 1m 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 여부 확인
- ③ 유해가스(불활성기체 치환시 산소농도 포함)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고, 노출이 우려되며 취약한 설비를 골고루 측정*
*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우려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시켜 측정

측정을 위한 조건 및 유의사항

- ① 측정기는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정밀도를 유지
- ②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 충분히 습득
- ③ 가스농도 측정기를 사용할 때 측정 전 기준농도, 경보설정농도 교정
- ④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필요시 착용
- ⑤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 보조자 또한 보호구 착용, 구명밧줄 준비
- ⑥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2) PH Meter로 측정하는 경우 <불산, 질산, 염산, 황산(액상)>

- ① 해당물질의 세척이 끝난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PH 기준의 중성 확인*

*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하여 3회 이상 측정 결과가 중성(「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 수소이온농도(PH 5.8 ~ 8.6) 기준 참조)

↳ 물 또는 초순수 등으로 세정할 경우 해당 설비에 부식 및 설비 손상 등으로 누출, 화학물질 간 혼합위험성으로 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세정방법 사용

- ② 해당 배관 직경, 길이 등을 고려, 누출이 우려되며 취약한 설비를 골고루 측정*

*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우려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시켜 측정

- **증명자료** | ① 안전작업 절차서 및 작업구간, 세정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 ② 화학물질 제거 전·후 현장사진, ③ pH meter 검증 자료*(황산, 불산, 염산, 황산, 질산(액상)) 또는 가스검지기 측정결과**(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가스검지기 교정성적서 포함)

* pH 측정 시 결과 값 pH 5.8~8.6, 표준용액 성적서 및 표준용액으로 검교정한 기록(결과표 또는 사진 등) 첨부

** 가스검지기 측정 시 가스농도 측정결과 값이 불검출(Not Detected)이어야 함

※ 질소 등 불활성기체로 치환작업 시 산소농도 적정수준(18%이상 23.5% 미만) 증빙

- **신고 및 수리절차** | 도급인은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였음을 문서로 지방노동 관서에 제출(증명자료 포함) * 신고 형식 자유(우편, e-mail, Fax 등)

- **작업개시** |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도급작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은 도급을 주더라도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도급승인 제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내용은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자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개정법 제167조, 제169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수급인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적격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 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의 시공능력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사업자(건설업 이외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상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를 말함

*** 개정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02 수급인이 해야 할 일

■ 도급승인 받은 작업은 하도급하여서는 안됩니다.

- 개정법 제60조는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하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금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소스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도급승인은 해당 수급인의 작업을 전제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승인한 것이고, 수급인 노동자의 재해 발생 시 도급인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 도급인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하고, 수급인이 이를 어기고 하도급 시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및 제169조에서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수급인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60조 하도급 금지는 수급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반 시 수급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승인 대상 작업을 하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하도급이 가능하더라도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도급승인 제위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내용은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자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적격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 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의 시공능력과 실적이 있는 사업자(건설업 이외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상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를 말함

** 개정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03 도급승인 관련 이의제기 절차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규칙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 ④ 제1항에 따라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도급승인 제도는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승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 승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승인 사유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불승인 처분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

■ 이의제기 절차

- 도급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불승인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문서로 제출, 지방관서는 이의제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

*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하고, 이의신청서(별도 양식 없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최초의 도급승인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 실시

- 또한, 도급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할 때에는 도급승인 신청인 사업장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

04 도급금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산안법 전면개정으로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위반 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도급금지, 하도급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승인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161조제1항)

* 현행 도급인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법조항	위반행위	기본 산정금액
법 제58조제1항	도급 금지 대상 작업*을 도급한 경우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	연간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법 제58조제2항 제2호	도급금지 대상이더라도 전문적이고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기술인 경우 승인 받아 도급할 수 있는데, 승인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연간 도급금액의 100분의 40
법 제59조제1항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승인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	연간 도급금액의 100분의 40
법 제60조	하도급 금지 대상 작업*을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작업의 하도급	연간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도급금액, 기간 및 횟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노력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법 제161조제2항)

■ 과징금 부과기준

- **기본산정** | 법률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액 10억원에 근사하도록 연간 평균 도급계약 금액의 50/100을 기준으로 산정

* '18년 도급인사 사업장 평균 도급금액 1,920백만원의 100분의 50이 상한액 10억원에 근사

- 도급금지 · 하도급금지 위반은 연간 도급계약 금액의 50/100으로 하고, 도급승인 위반은 10% 낮춘 40/100으로 정함

- **기본산정의 특례** | 도급 위반 작업과 비위반 작업을 일괄도급한 경우 위반작업의 도급금액만으로 산정하고,

-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총 상시근로자수 투입 비율로 도급금액 추계
- 도급금지와 도급승인을 함께 위반한 경우 도급금지 위반행위의 도급금액을 기본산정금액으로 함

- **조정** | 위반기간 및 횟수, 산재예방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조정

- **(1차 조정)**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기본 산정금액의 20~80%)에 따라 가중

위반기간*	가중치	위반 횟수	가중치
1년 이내	-	3년간** 1회 이상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3년간 2회 이상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2년 초과 3년 이내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3년간 3회 이상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3년 이상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까지의 기간

**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

- **(2차 조정)**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 산안법 위반이 없는 경우 1차 조정금액의 50/100 감경, 산업재해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20/100 가중

조치 이행의 노력	감경치
3년간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도급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결과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조정 금액 × 100분의 50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도는 점검 결과 행정처분 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빈도	가중치
3년간 1회 이상 발생	1차 조정 금액 × 100분의 20
3년간 미발생	-

- 1, 2차 조정을 거쳐 산정된 최종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액인 10억원으로 함

● **가산금** | 과징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

* 법 제161조제3항에 의한 가산금의 범위는 연 100분의 6이므로 1개월 기준은 100분의 6 / 12개월
= 1,000분의 5

산업안전보건법령

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등
 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산업재해 발생 여부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 ①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1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4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 법 제16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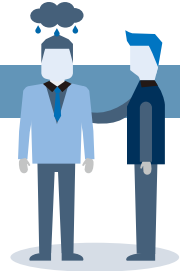
붙임 1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관련 Q&A



01

도급금지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도급금지와 관련하여 일부 유해·위험 작업 공정들이나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 대기업 간의 거래도 도급·하도급, 원청·하청 관계가 성립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8조 내용은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정한 작업에 대해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노동자가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임. 끝.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는 도급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급작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도급공정 전체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는 것인지, 도급금지로 규정된 화학물질 취급 작업만 도급을 금지하는 것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8조제1항제1호의 도급작업은 금속 또는 비철금속의 표면에 다른 금속의 얇은 막을 입히는 작업을 말함

▷ 도급작업은 전처리(탈지→수세→산세척→중화→수세)와 본작업인 도금(담금→통전→꺼냄→수세→건조) 등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도급금지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노동자가 이러한 도급공정 전체에 대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임
- 아울러, 도급작업 외에 도급금지로 규정된 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작업하는 것도 도급 금지 작업에 해당함

* ①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 ②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58조는 도급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함. 배출설비가 있는 밀폐 작업장에서 각각 6%, 5.94%의 납이 함유된 와이어와 리본으로 본딩 작업이 진행되나, 자동화 공정으로 노동자는 밀폐 장소 밖에서 운전업무만을 하는 경우 도급금지 대상인지

- ▣ 납이 함유된 금속물질을 노동자가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사내 도급이 금지되나,
- ▷ 작업자가 밀폐된 본딩 공정 밖에서 운전업무만을 하므로 납을 직접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전기전자제품에 납땜 작업이 납 가열 작업으로 도급금지에 해당하는지

- ▣ 납땜 작업은 납 가열 시 흡이 발생하여 노동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정도의 열*이 가해지는 지 여부로 도급금지 대상을 결정하여야 함

* 납의 녹는점은 327.4℃로서 가열온도 500~600℃에서 납 흡이 발생

↳ 납과 그 무기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7월)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급인가는 언제까지 인정되는지, 도급인가 기간 동안 사업주 변경 시 인가 유지되는지, 사업장 폐업 후 새 법인 설립 시 인가 연장되는지

- ▣ 개정법 시행일(20.1.16.)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주는 인가의 남은 기간 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하거나 그 인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까지 남은 인가기간을 인정함
- ▣ 도급인가 기간 동안 변경 사항이 생겨 법 시행일 이전에 다시 인가를 받으면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인가의 남은 기간에 대해 인가를 유지할 수 있음
- ▣ 새로운 법인 설립 시 인가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님

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급작업은 도급이 전부 금지되는 것인지, 도급인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법 시행일 이전 도급인가를 재신청할 수 있는지

▣ 개정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작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 다만,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 또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할 수 있음

▣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는 현행법에 따라 도급인가 신청이 가능하며, 개정법이 시행되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가의 남은 기간은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인정함

7 유해위험물질 중 질산, 염산 등을 사용하는 폐수처리장 도급 사업은 최근 개정된 산안법에 의해 불가능한 작업인지

▣ 유해위험물질인 질산, 염산 등을 사용하는 폐수처리장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은 도급 승인 대상임

8 아연도금 작업 시 아연 덩어리 투입 및 이물질 제거 작업도 도급금지 대상인지

▣ 용융아연 포트 내 수위 유지를 위해 아연 덩어리를 투입하고 용융아연 포트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은 아연도금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므로 도급작업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도금 작업에 해당되어 도급금지 대상임

9 납이 포함된 폐 PCB(인쇄회로기판), 전기선, 전구를 기계로 분쇄한 후 중금속이 포함된 분쇄물을 외부의 다른 업체로 운송하는 작업이 도급금지 대상인지

▣ 중금속의 운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도급금지 대상작업”이 아니며,

- ▷ '납'이 포함된 물질을 분쇄하는 작업은 중금속의 가공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쇄 과정에서 고열이 발생하여 인체에 유해한 흠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급금지 대상 작업이 아니라고 판단됨
- ▷ 또한, 납을 운송만 하는 작업은 도급금지대상이 아님

10 차량 외판재로 사용되는 아연 및 알루미늄 도금강판을 생산하는데, 직접작업과 간접작업 모두 도급승인 대상인지

- **직접작업** : 용융아연을 취급하는 작업(①도금조 표면 불순물 제거, ②도금조 바닥 불순물 제거, ③로봇 운전 및 샵 관리(아연제거), ④아연 샘플 채취)
- **간접작업** : 아연과 운반·투입 설비 운전 및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①도금조에 투입할 아연과 및 불순물 운반, ②컨베이어 피딩카(아연과 투입장치)에 고착된 아연 제거, ③주변정리)

▣ 도급이 금지되는 도급작업의 범위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작업 뿐만 아니라 본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전처리, 마무리 등)으로서 노동자가 사용·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도 포함됨

- ▷ 따라서 직접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하며, 간접작업 중에서도 도급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도급작업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작업도 도급금지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도급작업 공간과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져 도급작업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재 정리, 운반 등의 업무는 제외

11 무연납(Lead-Free)을 가열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8조 제1항제2호의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도급금지 작업에 해당하는지

☑ 무연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확인한 결과 구리, 은, 주석 등이 포함되어 있고 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무연납'은 납을 포함하지 않은 물질이므로 해당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58조제1항제2호의 '납의 가열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12 철판을 도금조에 넣어 용융아연을 코팅 후 도금조에 떠오르는 찌꺼기 제거 작업을 도급하고 있으며, 염산, 황산 취급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을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있음

- 사내 수급업체 도급계약 기간 전체에 대하여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외부 용역업체에 유지보수 작업을 의뢰할 때마다 외부 용역업체가 다를 경우에는 그때마다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폐수처리장의 '황산 등 화학물질'을 월 1시간 미만 취급하는 작업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 도금조의 찌꺼기 제거 작업은 도급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이므로 舊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인가 대상이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상으로는 도급금지 대상임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함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 도급승인은 도급계약 기간 전체에 대하여 받아야 함. 다만, 도급승인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도급계약 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중에 수급인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함

▷ 폐수처리장에서 황산을 취급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이 아님

13 당사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고 배관을 통해 부두로 이송한 후 선박에 싣는 선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허가대상물질 선적 작업*을 도금함

* 선박에 배관을 연결하고 철거하는 작업 및 배관의 밸브 조작 등

– 허가대상물질 선적 작업이 도금금지 대상인지

☑ 허가대상물질 선적 작업은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금금지 대상이 아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정의)제2호 “제조”란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함. 제3호 “사용”이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

14 도금과 관련된 생산작업은 원청이 하고 도금조 청소만 협력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도금조 청소*도 도금작업에 해당하는지

* 도금조의 약품을 모두 드레인한 후 물을 뿌려 세척하고 수조 벽면의 물기 및 이물을 제거하는 작업

☑ 도금이 금지되는 도금작업의 범위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작업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전처리, 마무리)으로서 도금에 사용·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노동자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도 포함됨

▷ 따라서 도금작업에 부수되는 세척작업, 불순물 제거 작업도 그것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한 도금이 금지되는 도금작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15 전선의 시작, 끝 부분을 마감재로 덮은 후 사이의 틈을 납으로 밀봉 처리하는 공정으로 납을 LPG 토치로 가열할 때 온도는 170~230℃로 측정될 경우 도금금지 대상인지

☑ 납을 가열 작업 시 납이 용해*, 흠이 발생하여 노동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정도의 열이 가하여지는지 여부로 해당 작업의 도금금지 대상을 결정해야 함

* 납의 녹는점은 327.4℃로서 가열온도 500~600℃에서 납 흡이 발생하기 시작
↳ 납과 그 무기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7월)

▷ 따라서 해당 납 가열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16 도금작업 공정 중 건조로 확인, 아연솔 온도 유지, 버너실 아연 유출 여부 체크, 아연분 집진기 켜 가동, 아연분 넘침 점검 및 청소, 집진실 내부 화재 점검, 공장 외부 연도 굴뚝 확인, 센터부 등 불필요한 조명 끄기, 가동 전 황산탱크와 냉각탱크 스팀밸브 개방 등의 업무가 도급금지 대상인 도금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도금작업을 도급금지한 취지는 도금작업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고자 함이므로 도금공정의 본작업 뿐만 아니라 도금활동에 결합하여 수행되어 노동자에게 유해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는 도금 전, 후의 일련의 과정도 도금작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따라서 도금이 금지되는 도금작업의 범위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작업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작업(전처리, 마무리)으로서 노동자가 사용·취급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도 포함됨

- 다만, 수급인 노동자가 도금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도금작업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도급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음

17 당사는 원청에서 비소 등의 물질을 사용하는 장비를 해체, 세척, 수리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함. 도급인이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업무특성상 원청 내에서 해체, 수리하기도 하고, 주소지가 다른 하청업체로 장비를 가져와 세척, 수리하기도 하는데 모두 승인 받아야 하는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비소 등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은 2020.1.16.부터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허가대상물질인 비소 등을 취급한 장비의 세척 등은 허가대상물질 사용에 부수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허가대상물질의 사용으로 볼 수 있어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함

* 일시·간헐 작업의 경우 도급금지 예외가 인정되며,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도급 가능

- ▷ 해당 장비를 도급인 사업장에서 세척, 수리하는 것은 사내도급으로 금지되며, 해당 장비를 수급인 사업장으로 가져와서 세척, 수리하는 것은 사외도급에 해당하므로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 경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18 황산, 산화동 가루를 이용한 전기도금이 도급금지 대상인지, 도금작업 설비는 수급인 소유지만 도급인 노동자를 배치하여 관리할 경우 도급금지 대상인지

- ▣ 도급금지 대상인 도금작업의 범위는 금속의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작업 뿐만 아니라 전처리, 마무리 등 본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으로서 노동자에게 도금작업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도 포함됨
- ▷ 도금작업 설비가 수급인의 소유이고, 이를 도급인 노동자가 관리하더라도 도급인 사업장에서 소급인의 노동자가 도금작업을 하는 것은 금지됨

19 아연도금공정을 도급하여 하청 노동자가 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에 의하면, 도금작업의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따라서 도금작업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작업을 해야함

* 일시·간헐 작업의 경우 도급금지 예외가 인정되며,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도급 가능

02

도급승인 관련



1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등의 작업은 없고, 폐수처리장에서 폐수 정화를 위해 황산을 투입(하루 한번 2L)하는 업무만 하고 있음. 도급승인 대상인지

☑ 개정 산안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1조 도급승인 대상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임

▷ 황산을 투입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2 발전소에 상주하는 업체가 대정비하는 것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정비·보수 설비 중 일부가 1% 이상 염산 설비라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해당 설비의 내용물(염산, 황산)을 모두 비운 후 작업하는 경우에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도급승인 신청의 주체는

☑ 개정 산안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대상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임

▷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에 상주하는 업체인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급 업무 중 일부가 도급승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 도급승인 신청의 주체는 도급을 하는 도급인 사업주임

3 개정 산안법 시행(20.1.16.) 후 피부부식성 구분1에 해당하는 제품 취급작업은 사내도급할 수 없는지, 승인 어떻게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벌칙은 있는지

- ☑ 개정 산안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대상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임
- ▷ 따라서 피부부식성 구분1, 구분2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이 도급승인 대상은 아님
- ☑ 도급승인을 받으려면 도급승인 신청서에 ① 도급 공정 관련 서류, ② 도급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4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이 있는 설비의 운전, 해당 설비의 볼트 조임 등 간단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 해당 설비 보수를 위하여 황산 등 내용물을 빼내는 준비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 ☑ 개정 산안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대상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임
- ▷ 따라서 해당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운전은 도급승인 대상이 아니며, 볼트 조임 작업도 해당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지 않는다면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황산 등 화학물질을 빼내는 작업은 해당 작업이 황산 등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의 준비작업이라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으로서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함



5 도급승인 관련 질의

- 가. 도급승인 대상 작업 기준이 사업장 단위인지
- 나.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이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로 규정되어 있는데, 액상형태만 해당되는 것인지
- 다.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와는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대 설비(Pump, NaOH탱크 등)의 유지·보수 작업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 라. 설비 취급 물질 기준이 공급물질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배출물질, 부산물질까지 포함되는지
- 마. 해당 설비를 열지 않고 프로그래밍(운전조작 등)만 하는 작업도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 바. 화학물질 취급설비에서 물질 취급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전장부(전기시설)를 유지·보수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공간적으로 분리된 도면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가 도급승인은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도급대상 작업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서 단위 사업장별로 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 발생상태 등이 다름

-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도급인이 동일한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더라도 사업장(공장)이 여러 개라면 단위 사업장(공장)별로 각각 도급승인을 받아야 함

나 물질의 성상에 따라 도급승인 대상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카스번호*가 동일한 물질은 도급승인 대상에 포함됨

* 불산과 불화수소(HF, 7664-39-3), 염산과 염화수소(HCl, 7647-01-0)는 카스번호가 같으므로 모두 도급승인 대상(불산과 염산은 각각 불화수소와 염화수소의 수용액)이나, 황산(H₂SO₄, 7664-93-9)과 황화수소(H₂S, 7783-06-4)는 완전히 다른 물질로서 황화수소는 도급승인 대상이 아님

다 부대설비(펌프, 탱크)는 배관을 통해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가 유입된다면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함

라 배출물질, 부산물질 속에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노동자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임

마 설비 밖에서 프로그래밍(운전조작 등) 작업을 하는 경우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바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에 포함됨

6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에 청소, 유지보수 작업이 포함되는지, 도급승인 대상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도급공정에서의 청소, 유지보수 작업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 ☑ 청소, 유지보수 작업이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을 포함하거나 해당 작업의 전후 과정으로 노동자에게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청소, 유지보수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도급승인 대상임
- ▷ 도급은 도급승인 대상이 아니라 도급금지 대상이며, 도급이 금지되는 도급작업의 범위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작업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전처리, 마무리 등)으로서 노동자가 사용·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도 포함됨
- 따라서 도급공정에서의 청소, 유지보수 작업이 도급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으로서 도급작업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져 노동자에게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함

7 도급승인은 도급계약 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계약 후에 받아야 하는지, 도급승인 신청 시 도급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 ☑ 도급승인은 수급인이 도급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의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8 도급승인 관련 질의

- 가. 약품액을 투입하기 위해 볼트를 풀고 주입구를 여는 작업이 설비를 분해, 해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 나. 유해물질 배관 철거 후 실시되는 도장 작업도 도급승인 대상 작업인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라면 하도급이 가능한지
- 다. 배관 속에 유해위험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보온재 제거 작업도 설비로 판단하여 도급승인 대상인지
- 라. 법적 검사를 위해 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업체가 설비를 해체했을 때 도급으로 간주하여 도급승인 대상인지, 아니면 법적 검사는 도급이 아니니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마. 시중에 판매되는 설비를 구매하여 A/S를 의뢰하는 부분도 도급으로 판단되어 설비 해체가 필요한 경우 도급승인 대상인지

가

볼트를 풀어 주입구를 여는 작업으로 인해 노동자가 도급승인 대상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면 이는 '취급 설비의 분해'에 해당하므로 도급승인 대상임

- 다만, 화학물질의 누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비 주입구를 개방하는 정도라면 도급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나

배관 내 유해위험물질이 도급승인 대상물질이라면 이를 철거하는 작업은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장 작업이 동 배관의 외부에서 이루어진다면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하도급이 가능함

다

배관 내 도급승인 대상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없다면 설비 외부의 보온재 제거작업은 도급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라

법적 검사로서 행정기관이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원청의 업무를 도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승인 대상이 아님

마

설비 A/S작업이 도급승인 대상 물질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이라면 도급 승인 대상임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6호: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 다만, 해당 설비를 A/S 업체로 보내는 등 원청 사업장 밖에서 개조·분해·해체·철거가 이루어진다면 도급승인 대상이 아님

9 식각작업*에 농도 20%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의 같은 농도의 부식성 물질과 농도 60% 이상인 인산, 아세트 산, 불산, 그 밖의 같은 농도의 부식성 물질을 사용할 경우 도급승인 대상인지

* 화학물질의 부식작용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물질의 형태를 만들거나 표면을 가공하는 작업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함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도급 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르면 도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도급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첨부서류: ①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10 암모니아 냉동기를 수리,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의 도급승인 대상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도급승인 받은 작업의 하도급 금지는 사업의 종류, 규모, 공사기간 등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는지

- 수급인이 임의로 재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최초 도급인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지
- 수급인이 임의로 재하도급을 진행한 경우 최초 도급인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함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 ▷ 따라서 암모니아 냉동기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한다면 이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을 도급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는 도급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종류, 규모, 공사기간과는 무관하게 적용됨

▷ 도급승인은 해당 수급인이 작업함을 전제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승인한 것이고, 수급인 노동자에게 재해 발생 시 도급인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하고, 수급인이 이를 어기고 하도급시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및 제169조에서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수급인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하도급 금지는 수급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반 시 수급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승인 대상 작업을 하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1 당사는 원청으로부터 화학물질 설비의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함

- 중량비율 1% 황산, 불산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혼합기의 주요 부품이 고장 시 수리 업무를 부품 제조회사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 하도급이 금지될 경우 주요 부품에 대한 조작 및 교체 등 실제 작업을 당사 직원이 수행하되 보호구 착용 상태로 부품제조사 직원이 옆에서 점검·지도·조언 행위는 가능한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에 따라 도급승인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해당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음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수행할 때 다른 사업체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도급계약 체결 시 해당 사업체를 수급인에 포함하여 공동도급 형태로 승인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수급인이 부품을 납품받아 교체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품 제조회사 직원이 무상으로 점검, 지도, 조언 등만 한다면 이를 하도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2 종합건설사인 A사가 B사에게 1% 이상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투입할 빈 배관 설치 등의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승인 대상인지(배관 설치 후 황산 등 화학 물질을 투입해 시험 작업을 수행)

- 위와 같은 경우에 B사에서 배관 설치 후 황산 등 물질을 투입하여 테스트하는 중 누설이 발생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함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 따라서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가 들어있지 않은 빈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는 승인 대상이 아님

- 그러나, 배관을 설치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투입한 이후에 배관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함

13 하청업체에서 신규 배관을 설치 후에 황산, 불산 등 화학물질을 투입하여 테스트하는 도중 누설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하는 경우 도급승인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함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 따라서 신규 배관 설치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이 아니지만, 황산, 불산 등 화학물질이 투입된 후 누설되어 배관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을 포함한 보수작업을 도급하려면 긴급한 작업 이라고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공정관련 서류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안전보건관리계획서만 제출)

14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가 통과되는 탱크로리, 밸브 조작 등 출하시설 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한다면 승인 대상인지(수급업체는 현장설비 보수작업이 아닌 제품 출하에 대한 관리만 실시)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비율 1% 이상
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함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 ▷ 따라서 수급업체가 수행하는 제품 출하에 대한 관리업무가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급
승인 대상이 아님

15 법이 개정되어 도급작업뿐만 아니라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물질 사용 시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개정법 제59조에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2가지 외
에 다른 건강유해성 항목*도 추가되는 것인지

* 심한 눈 손상성,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등

- 고용노동부 고시*에 보면 급성 독성은 구분 1~4, 피부 부식성은 구분 1~2로 분
류하고 있음.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 제58조에 따라 도급작업은 사내도급이 원칙적으
로 금지*되며, 같은 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
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사내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함

* 일시·간헐적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와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인정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 ▷ 따라서 개정 법령은 모든 급성, 피부 부식성 물질 사용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독성분류 등을 도급승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16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단순히 취급하는 작업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함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 따라서 단순히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이 아님

17 당사는 원청으로부터 도급인가 대상 업무*를 도급받아 업무를 하는 수급업체로 원청이 인수합병되어 법인 변경 시 기존 인가 받은 기간 동안 도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도급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작업, 비소, 베릴륨, 황화니켈 등 허가대상 물질 제조·사용 작업

- ☑ 도급인가 받은 원청 사업장을 인수합병한 법인이 원청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도급 작업공정, 기계·설비, 유해위험물질 종류·사용량, 도급기간 등 도급인가 당시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변화가 없다면 해당 작업을 계속하여 도급을 할 수 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16.부터는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 개정법이 시행되면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주는 인가의 남은 기간에 대해 법 시행 이후 3년까지만 도급을 인정함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주는 그 인가의 남은 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하거나 인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다만, 도급인가 받은 원청 사업장을 인수합병한 법인이 원청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거나, 합병 후 도급 작업공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변화가 있다면 새로이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임

18 도급승인 관련 질의

가. 본사가 해외에 둔 지사로서 본사가 납품한 제품에 대해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에 대해 법적 관리기준 미만으로 관리할 경우 개조·해체·이설·서비스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도급승인 대상 작업 수행 시 해외 본사에서 파견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 금지에 해당되는지

* 기술적으로 국내 지사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다. 해외 본사 작업의 경우 국내 협력사 직원이 포함되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금지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음

- 해외 본사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이 아니고 파견의 경우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파견의 기준은 무엇인지

라. 황산 등 취급 설비인 경우 해당 화학물질과 상관없는 설치 작업, 통상의 점검·보수 작업은 승인 대상이 아닌지

마. 개발장비는 본사 계약으로 진행하고, 구매계약은 평가 종료 후에 성공 여부에 따라 체결되는데, 이 경우 3자 협의(계약서 작성)에 의해 지사 대응이 가능한지

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함

▷ 따라서 중량비율 1% 미만의 황산 등 취급 설비 개조 등은 도급승인 대상이 아님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는 “파견”이 아니라 “사내도급”을 제한하는 것임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임

- 아울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오니 참고 바람

라

설치 작업, 점검·보수 작업이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지사가 원청 사업장 내에서 작업할 내용이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해당한다면 원청은 도급승인을 받아야 함

19 반도체용 가스공급장치(가스캐비닛)의 전장부 유지보수 및 철거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 가스공급부(Cylinder 체결부/배관/밸브류/배기)와 전장부(Control Box로 모니터/전선 등 전기 신호 제어부)가 분리되어 별도의 문(Door)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

- 황산, 불산, 질산, 염산 공급장치의 전장부 유지보수 및 철거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 가스공급장치의 전장부 유지보수 및 철거 작업이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포함한다면 도급승인 대상임

* 전장부가 건물구조상 해당 화학물질 취급 설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장부도 화학물질 취급 설비에 해당

20 반도체 제조회사(이하 “매수인”)가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회사(이하 “매도인”)로부터 장비 매입 후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에 따라 장비의 하자보수 작업을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는 “도급”에 해당하는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통상적인 제품이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에 결함이 있어 하자담보기간 내에 이를 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급이 아닌 하자보수로 보아야 할 것임

- ▷ 단, 하자보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내용상 사용자 귀책에 따른 사용 중 고장에 대한 수리 등 유지·보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도급에 해당함

21 A회사는 B회사(원청)로부터 '운전 및 정비'에 대한 용역 수행 (B회사 관리자는 7명, A회사는 운전 및 정비 역할을 수행하는 50명 근무)

- A, B회사 둘 중 어디에서 도급승인을 신청해야 하는지
- 화학설비 보수를 위해서 다른 업체(C회사)의 작업허가를 위한 승인은 A, B 어디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 배관 누수로 인한 개보수가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건건이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예를 들어 가스켓 교체 등)

☑ '운전 및 정비' 업무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작업을 포함한다면 해당 업무를 사내도급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함

- ▷ 도급승인은 도급을 준 사람의 의무이므로 원청인 B회사가 도급승인을 신청해야 함
- ▷ 도급승인 받은 작업의 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작업을 다른 수급인 C회사에서 수행하려면 원청인 B회사는 C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 해당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승인을 받아 작업할 수 있으며, 도급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임

22 당사에서는 설비 오퍼레이션 용도로 염산(7%)을 사용하고 있으며, 타 약품 중화제로 활용하기 위해 보관도 하고 있음

-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없이 단순히 설비를 오퍼레이션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오퍼레이션 시 약품 주입 배관 또는 펌프의 손상으로 보수 공사를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예를 들어 가스켓 교체 등)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단순 사용 또는 보관은 도급승인 대상이 아님

- ▷ 다만, 해당 설비를 보수하기 위해 개조·분해·해체·철거할 경우에는 도급승인을 받고 작업해야 함

23 당사는 원재료 투입 및 용해* → 저장 → 필터&공급 → 전기도금 → 재단으로 연결되는 공정라인을 운영

* 세척된 구리를 용해조에 투입하고 황산구리 용액을 넣어 순환시키면서 구리를 녹이며 저장조에 구리 농도를 유지하는 공정

- 원재료 투입 및 용해하는 작업이 도금공정에 해당하는지 질의

☑ 도금이 금지되는 도금작업의 범위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작업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전처리, 마무리 등)으로서 노동자가 도금작업에 사용, 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도 포함되므로

▷ 원재료를 용해조에 투입하여 녹이는 작업은 도금작업에 해당함

24 도급승인 관련 질의

가. “취급”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가 아닌 화학물질의 운반, 이송, 반입, 설비의 설치의 경우 도급승인 대상인지

다. “중성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라. 화학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설비의 범위가 본체 외 그 주변 부대장치(설비에서 나온 배기관과 외부 배기구를 잇는 부분, 설비의 챔버)까지 포함하는지

마. 위 “중성화”의 의미가 중량비율 1% 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0%를 의미하는 것인지

바. 또한 “중성화” 이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건별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회 신고로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신고가 필요없는 것인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함

가	“취급”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정의를 준용하여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을 말하며, “취급하는 설비”는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함
나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이 포함되지 않은 해당 화학물질의 운반, 이송, 반입은 승인 대상이 아니며, 해당 화학물질 취급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도 승인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설비에 다른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은 개조에 해당하므로 승인 대상임
다	중성화의 의미는 적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하여 3회 이상 측정한 결과가 중성인 경우를 말함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 수소이온 농도(pH 5.8~8.6) 기준 참고
라	도급승인 제외를 위해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설비의 범위는 본체 외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대설비도 포함됨
마	중성화의 의미는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pH 5.8~8.6을 의미함
마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 제거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경우 해당 설비에 다시 화학물질이 투입되지 않는 한 추가 신고는 필요 없음

25

당사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제조·판매 회사로부터 장비의 반입, 설치, 보수·서비스의 일부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 이설 작업 및 보증기간 만료 후 유상보수 작업도 수행함

- 원청 사업주가 당사를 수급인으로 도급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해도 되는지
- 원청 사업주가 당사에게 해당 작업을 발주한 경우 당사의 기술력만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작업에 대하여 일본 회사에게 의뢰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 도급승인 받은 작업*을 수급인이 다른 사업주에게 하도급 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하도급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

- ▷ 처음 도급계약을 맺을 때, 도급작업을 수행할 사업주들을 공동 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맺고 승인을 받아야 함

26 당사는 지게차를 임대하여 사업장 내 사용 중이며, 임대회사에서 지게차 증류수의 혼합물*을 보충하는 작업을 수행함

* 1회/월, 평균 1L 투입(대상물질: V-Type Seriee 전지(황산 23~26%, 납 68~70%))

- 임대회사가 당사의 사업장에서 위험작업을 수행한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는 바, 위 업무에 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황산을 투입하는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님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7 협력업체가 산세조 25㎡에 불산(50%), 질산(60%), 공업용수를 혼합 희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주 주기로 산세조 내부 청소를 하고 있음

- 협력사에서 개조·분해·해체·철거가 아닌 산세조 내부 청소를 위해 신체 전부가 들어가는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 만약, 외부 공사업체가 산세조 내부에 공사(FRP라이닝, 필터교체 등)를 위해 신체 전부가 들어가면 도급승인 대상인지
- 외부 공사업체 공사가 도급승인 대상이라면 작업 전 언제 노동부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함

- ▷ 따라서 산세조 청소 또는 내부 공사는 산세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함
- ▷ 도급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4일이고 도급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는 도급 공정에 관한 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이므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작업 공정별로 도급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증명자료 첨부)한 경우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28 설비의 공급라인은 중량비율 1% 이상, 배출라인은 다른 물질과 희석되어 중량비율이 1% 이하라고 할 때 배출라인에 대한 도급승인은 필요한지, Drain 배관과 배기 덕트도 포함되는지, 화학물질 제거 시 측정 항목과 기준은 무엇인지

▣ 배출라인 내부에 도급승인 대상물질이 1% 이하로 잔류할지라도 공급라인을 통해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가 유입되어 있다면 배출라인도 도급승인 대상이며, Drain 배관과 배기덕트도 해당 화학물질이 유입되기 때문에 도급승인 대상임

▷ 화학물질 제거 신고 시 증명자료로 ①안전작업 절차서(작업구간, 세정방법 등을 포함), ② 화학물질 제거 전·후 현장사진, ③pH Meter 검증자료 또는 가스검지기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 측정 결과값은 pH 측정 시에는 pH 5.8~8.6이고, 가스농도 측정 시에는 “불검출(Not Detected)”이 나와야 함

- 지방노동관서에 화학물질 제거 신고서가 접수되면 도급작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하도급이 가능함

29 A사는 고농도의 불산 수처리가 어려워 해당 폐수 처리를 B사에게 위탁하고 있음. B사가 C사에게 폐수 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함

▷ 따라서 폐수 처리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포함할 경우 A사는 B사에게 해당 작업을 도급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받은 작업은 하도급이 금지됨

30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구매하여 도급인의 사업장 내 탱크에 저장하고, 이를 하역하는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사내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함
- ▷ 따라서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과정 없이 화학물질을 구매, 저장, 하역하는 것은 도급승인 대상이 아님

31 폐수처리장에서 폐수 정화를 위해 황산을 투입하는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사내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함
- ▷ 따라서 해당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 과정 없이 황산을 투입하는 작업만 수행한다면 도급승인 대상이 아님

32 당사는 폐수처리시설을 건축하여 일정 기간 운영하다가 해당 시설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업체임(이후 지자체가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해당 시설의 운영을 도급함)

*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기업이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관리·운영하다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양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한 형태

- 당사가 폐수처리시설을 건축하여 운영 중 염산 취급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의 누출 우려가 없는 조건에서 해당 화학물질 취급 설비를 보수하거나 작동 테스트하는 것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에 의하면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사내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건설업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폐수처리시설을 건축하고 운영하던 중 염산 취급 설비 교체를 도급할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물을 지자체에 이양한 후 동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승인을 받아야 함
- ▷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투입 전 작동 테스트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이 아니나 해당 화학물질을 투입 후 설비를 보수하거나 작동 테스트하는 것은 도급승인을 받고 작업해야 함

33 도급승인 관련 질의

- 가. 도급승인은 2020.1.16. 이전에 받아야 하는지, 법 시행 전 도급계약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 나. 안전보건평가는 어떻게 받는지
- 다.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 및 사용 작업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 라. 도급승인 신청 접수처 및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사내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일은 2020.1.16.임

가

2020.1.16.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서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0.1.16. 이후 도급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며, 2020. 1.15. 이전에 이미 도급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도급할 때 승인 받으면 됨

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받아야 함

* 현재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산업보건연구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위생협회, 한국안전환경과학원, 건강안전연구소, 안전보건진흥원 등이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다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및 사용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이 아님

라

도급승인 신청서 접수처 및 담당부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 예방지도과이며, 개정 법령, 고시 등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법령 정보에서 “최근 제·개정 법령” 및 “훈령·예규·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람

34

당사는 질산을 사용하는 업체로 질산이 담긴 약액조에 제품을 넣는 취급 작업 및 질산 약액조를 수리(분해, 해체)하는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사내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함

▷ 도급승인 제도의 취지는 수급인의 노동자가 원청을 바꾸어가며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을 반복하여 직업병에 걸릴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이므로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란 해당 설비 내부에 작업자의 신체 전부가 들어가는 작업 또는 신체 일부가 들어가더라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따라서 질산 약액조를 수리(분해, 해체)하는 작업은 물론, 질산이 들어있는 약액조에 제품을 넣는 작업이 노동자의 신체 일부가 해당 설비 내부에 들어가는 작업으로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역시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함

35

도급승인 관련 질의

가.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이 묻어있는 폴리머의 필터(부직포 재질로 1회 사용 후 폐기)를 교체(사용한 필터를 빼고 새 필터를 넣는 작업)하는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나.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이 묻어있는 폴리머의 방사 구멍(합성섬유 실이 뽑아져 나오는 구멍)팩(구멍판이 여러개 겹쳐져 팩을 이룸)을 빼내어 구멍실로 운반 후 분해하고 물로 세척하는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다.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질산이 채워져 있는 탱크에 폴리머 필터를 담궜다가 꺼내는 세정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 ☑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사내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함

가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이 묻어있는 폴리머 필터를 포함한 설비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 설비로 폴리머 필터 교체 작업은 이를 개조, 분해하는 작업이므로 도급승인 대상임

나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이 묻어있는 폴리머 방사 구멍을 포함한 설비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 설비이므로 이를 개조, 분해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임

다

폴리머 필터 세정 작업이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질산 탱크 내부에 노동자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작업으로서 노동자가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승인 대상임

36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이 들어 있는 설비에 제품을 담갔다가 꺼내는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 ☑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사내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함

- ▷ 도급승인 제도의 취지는 수급인의 노동자가 원청을 바꾸어 가며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을 반복하여 직업병에 걸리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이므로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란 해당 설비 내부에 작업자의 신체 전부가 들어가는 작업 또는 신체 일부가 들어가더라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따라서 황산, 불산, 질산이 채워져 있는 설비에 원재료를 투입·반출하는 작업은 노동자의 신체 일부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 설비에 들어가는 작업으로서 노동자가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함

37 ○○군은 ○○군시설관리공단에 하수처리장 관리를 대행하게 하고, 수질원격 감시체계(TMS)의 수질측정기기 관리는 다른 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있음.

가. ○○군이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측정기기의 소모품 교체 작업을 도급할 경우 승인 대상인지

나.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중량비율 외에 노출시간이나 노출량에 대한 기준은 없는지

다. 실험실에서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것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가

측정기기 소모품 교체작업이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도급하려는 경우 승인 받아야 함

나

도급승인 대상 작업의 기준으로 노출시간이나 노출량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다

황산 등을 취급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이 아니며, 황산 등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거나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직접 수행하거나 사내 도급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함

3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2020.1.16.)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한 경우 도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야간이나 새벽에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신고한 경우 수리통지가 가능한지, pH Meter 없는 경우 리트머스지로 증빙하여도 되는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는 법 시행일 이후 “도급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일 전에 이미 도급한 자는 그 도급계약 기간 동안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 ▣ 2020.3.4. 화학물질 제거 신고가 접수되면 수리통지 절차 없이도 도급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침 변경함
- ▣ 리트머스지는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분할 뿐 pH 농도 측정이 가능하지 않고, 정밀도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해당 화학물질이 모두 제거되었다는 증명자료로 적절하지 않음

39 도급승인 관련 질의

- 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가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 제거를 진행해도 되는지
- 나.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 제거 후 배관 내 잔여물 확인을 위해서는 배관 해체가 불가피함.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배관 해체 후 해당 작업을 다른 업체에 인계해도 되는지
- 다.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 배기덕트에 연결된 Main 배관, Sub- main 배관의 철거 작업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 라. 배출라인을 경유하는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가 1% 미만이면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마.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였다는 신고를 E-mail 또는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 시공사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급승인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시공사가 직접 대상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나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 제거 후 확인을 위해서 배관의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 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시켜 측정하여야 함. 다만, 도급인이 직접 배관을 해체하는 것은 승인 대상이 아님

다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 배기덕트에 연결된 부분도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설비와 연결된 배출라인도 해당 화학물질 취급설비이므로 배출라인에서 화학물질의 농도가 감소하더라도 이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함

라

마. E-Mail 신고는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이 확인할 경우 가능하며,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였다는 신고는 시스템으로 가능하지 않음

* 2020.3.4. 화학물질 제거 신고가 접수되면 수리통지 절차 없이도 도급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침 변경함

40 도급승인 관련 질의

가. 현재 폐수처리장 운영을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장에 황산을 보유하고 있음. 도급승인 받아야 하는지

나. 향후 황산 보유 설비 개조, 분해, 해체, 철거작업을 협력업체가 수행하도록 하려면 승인 받아야 하는지

다. 향후 황산 보유 설비 개조 등의 작업을 협력업체가 하거나 협력업체가 다른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맡길 경우 승인 받아야 하는지

가

황산 보유 시설이 있는 폐수처리장의 운영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도급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나

황산 보유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을 협력업체가 수행하도록 하려면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함

다

폐수처리장 내 황산 보유 설비 개조 등의 작업을 협력업체가 수행하게 하려면 폐수처리장 소유 사업장은 도급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 받은 작업은 하도급이 금지되므로 승인받은 작업에 다른 공사업체가 참여할 경우 폐수처리장 소유 사업장은 해당 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승인을 받아야 함

41 도급승인 관련 질의

- 가. 사업주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포함된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해당 작업을 협력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나. 해당 공사 전체를 시공사가 도급받아 진행할 수 있는지
- 다.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협력사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도급승인의 예외로 적용되어 하도급이 가능함

* ①안전작업절차서(작업구간, 세정방법 포함), ②화학물질 제거 전, 후 현장사진, ③pH Meter 검증자료, 가스검지기 측정결과 등 측정 결과값

나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포함된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려면 그 공사를 맡기려는 자가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작업은 하도급이 금지됨

다

도급승인의 예외를 적용 받으려면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하려는 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42 도급승인 관련 질의

- 가. 당사는 방류수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을 예정으로 TMS 설비 중에는 '황산시약'을 사용하여 방류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으며, 도급 과업범위는 측정기 내의 황산시약 펌프, 튜브류, 시약 등의 소모품 교체 및 수리, 고장으로 인한 점검이 해당됨. 해당 과업범위가 도급승인 대상인지 여부
- 나. 해당 취급작업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를 실시할 예정인데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다. 시약을 비교적 소량 사용하는데, 도급승인 대상 기준에 취급 용량 등에 따른 예외규정은 없는지

가

황산시약 펌프, 튜브류 등 소모품, 부품 교체 및 고장에 대한 점검, 수리 등이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을 포함할 경우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함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승인 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와 달리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미리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를 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승인을 받아야 함

다

도급승인 제도는 취급 용량에 따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43

중량비율 50% 황산을 탱크로리로 탱크에 주입하는 작업, 탱크 상부 도어를 열어 황산을 붓는 작업, 황산 탱크 방류벽 내 황산 이송 펌프 분해, 해체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 황산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 없이 탱크에 탱크로리의 주입 호스를 탈/부착하거나 황산을 붓는 작업만 한다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 시 자신의 노동자와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특별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유해성 주지, 불침투성 보호구 지급 등

☑ 황산 이송 펌프는 황산 취급 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해, 해체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임

44

중량비율 1%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을 모두 세정하고, 배관 업체를 불러 보수작업 진행할 경우 도급승인 받아야 하는지, 화학물질 제거 신고 후 수리 통보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 도급인이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승인 받지 않아도 도급이 가능함

▷ 2020.3.4.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 제거 신고가 접수되면 수리통보 절차 없이 도급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음

- 다만, 화학물질 제거 신고 후 잔류 화학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45 도급승인 관련 질의

- 가. 황산 공급·운송 작업, 분석기기 유지보수를 위해 솜에 황산을 묻혀 배관의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 나. 수처리 황산 사용 설비 유지관리 단가계약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 다.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범위
- 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는 협력업체 별로 받아야 하는지

가

황산 공급·운송 작업, 황산을 이용한 배관 세척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승인을 받아야 함

나

황산 사용 설비 유지관리 계약의 내용에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가 경유하는 국소배기장치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이므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함

라

하나의 도급공정에 협력업체가 여럿인 경우 각각의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작업 전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함

46 도급승인 관련 질의

- 가. 도급승인 대상 설비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설비만을 의미하는지
- 나. 해당 설비를 분해하지 않고, 그 위에서 하는 작업, 도색작업, 점검, 검사(PT, RT)하는 작업, 보온 작업, 방류벽 및 방류턱 보수작업, 해당 설비의 기초 설치 및 보수작업이 승인 대상인지
- 다. 개정법 이전 도급한 작업의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인지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사내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함
 - ▷ 이 때 해당 화학물질 취급 설비란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설비로서 현재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취급하였었던 설비도 포함함
- ☑ 해당 설비 위 등 외부에서 수행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를 도색, 점검, 검사하는 작업, 해당 설비의 보온작업, 해당 설비 주변에 방류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거나 해당 설비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때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함
- ☑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2020.1.16. 이전에 이미 도급하여 도급작업을 개시한 자는 해당 도급기간까지는 승인 받지 않아도 되며, 법 시행일 이후 새로 도급하려고 할 때에 승인을 받으면 됨

47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황산, 염산 시약을 사용하는 수질측정기기(현장 모니터링용 농도계를 포함한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등)를 수시로 분해, 점검하는데, 이런 작업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 ☑ 손에 들고 다니는 소형 기기라면 설비로 보기 어려우나,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설치된 기기라면 설비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설비가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한다면 이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함

48 도급승인 관련 질의

- 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도급한 경우 승인 받아야 하는지
- 나. 황산 취급 설비 세정 작업을 연 2회 3월과 9월에 하는데, 이것을 연 1회 도급계약으로 묶어 승인 받을 수 있는지
- 다. 황산 배관이 손상되어 황산이 보온재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경우 보온재 분해, 해체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인지
- 라. 황산 배관 보수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설비 외부에 비계를 설치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 마. 도급작업이 도급계약기간보다 1주일 더 진행되어야 할 때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연장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이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연장승인될 때까지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도급계약을 맺고 실제 도급작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승인 받을 필요가 없으며,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도급하려고 할 때 승인 받으면 됨

나

연 2회 특정 기간에 도급작업이 진행되더라도 1년 기간의 도급계약을 맺고 해당 작업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은 후 도급승인 신청이 가능함

다

손상된 황산 배관을 수리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나, 배관을 둘러싼 보온재 해체 작업만 도급한다면 승인 대상이 아님. 다만, 황산이 누출된 보온재 해체 작업은 유해위험작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하고 작업을 하여야 할 것임

* 특별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유해성 주지, 불침투성 보호구 지급 등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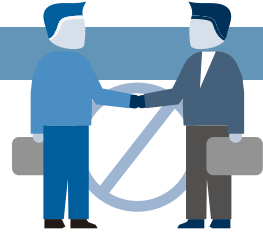
비계를 설치하고 보수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황산 배관 보수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설비 보수 작업이 아니라 설비 외부에 비계를 설치하고 이를 보수하는 작업만을 하도급하는 것은 가능함

마

도급작업이 도급승인 기간 종료일 이후 더 진행되어야 한다면 도급승인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변경승인을 받으면 되며, 이 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 도급승인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 변경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도급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 도급작업을 할 수 없음

03

하도급금지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59조의 도급승인은 중소기업에 하청을 금지하는 것인지, 황산 사용 작업의 도급승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간헐적 작업은 하도급할 수 있는지

- ▣ 도급은 기업의 규모나 지배구조가 도급인-수급인 지위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바 없으므로 산안법이 정의한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도급인·수급인에 해당함
- ▣ 황산 사용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며, 황산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임
-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제60조 하도급 금지는 도급승인 작업에 대해서 수급인이 해당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는 내용임.

2 당사는 본사(외국 법인)와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본사 제품을 구입한 고객사를 방문하여 설비* 조립·분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사(국내 법인)임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

- 본사와 당사는 다른 법인이므로 고객사는 본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사가 도급승인 받은 업무를 국내 지사로 하여금 수행케 하는 것이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 ▣ 국내 지사가 고객사로부터 해당 설비의 조립·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사가 고객사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국내지사로 하여금 수행케 하는 것은 하도급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위반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3 당사는 해외 본사의 국내 지사로서 해외 본사가 원청으로부터 수주한 도급승인 대상작업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원청으로부터 직접 수주받아 작업하면 하도급 금지 위반이 아닌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에 따르면 도급승인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해당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도급인이 하도급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승인을 받는다면 이는 더 이상 하도급이 아니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

붙임 2

관계 법령 및 서식



산안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급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안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안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이하“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산안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①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제2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표 12에 따른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 ①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7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 ②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2.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3.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까지,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6조까지, 제469조부터 제474조까지,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법 제58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급공정
2.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3.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5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① 법 제5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2.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7조부

터 제299조까지,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제513조, 제619조, 제620조, 제624조, 제625조, 제630조, 제631조에서 정한 기준

3. 영 제51조제2호에 따른 작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74조를, 도급승인의 절차,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은 “제78조제3항의 도급승인 기준”으로 본다.

시행규칙 별표(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종 류	평 가 항 목
종합 평가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4.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가.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나.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에 관한 사항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가.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나. 건강검진 현황(신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등)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 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및 제3호 중 안전 관련 사항, 제5호의 사항
보건 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 중 바목의 사항, 제3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 비교: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19. . .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 생산품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수급인	사업장 명칭		업종	
	소재지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도급 내용	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수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도급기간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3항,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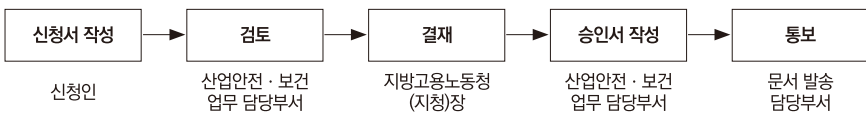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19. . .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 생산품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수급인	사업장 명칭	업종		
	소재지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도급 내용	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수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도급승인 기간			
	도급승인 연장 기간			
도급연장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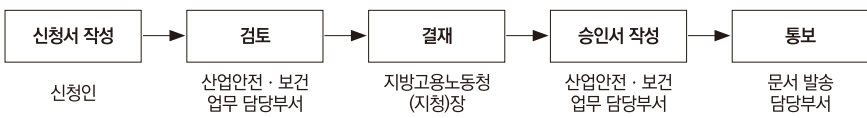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신설 2019. . .>

유해 · 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 생산품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수급인	사업장 명칭					업종			
	소재지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도급	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수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도급승인 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검토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부서	→ 결재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 승인서 작성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부서	→ 통보 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2019. . .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서

도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 생산품
	대표자	근로자 수
수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 생산품
	대표자	근로자 수
도급공정		도급계약기간
		도급승인기간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장 직인

붙임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세부내용



■ 도급작업 /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법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 보건평가의 평가항목·세부평가내용 구성(I)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작업표준(작업안전수칙, 작업절차서)의 적절성 현장의 작업환경(상태)과 작업방법(행동·절차)의 적절성 등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7조 채광 및 조명, 제8조 조도, 제10조 작업장의 창문,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제21조 통로의 조명, 제22조 통로의 설치, 제72조 후드, 제73조 덕트, 제74조 배풍기, 제75조 배기구, 제76조 배기의 처리, 제77조 전체환기장치, 제78조 환기장치의 가동, 제83조 가스 등의 발산억제조치, 제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 제85조 잔재물 등의 처리,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 예방,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 누출 방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 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31조 작업장의 바닥, 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 제433조 누출의 방지조치, 제434조 경보설비 등, 제435조 긴급 차단 장치의 설치 등,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등
4.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442조 명칭등의 게시,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44조 빈 용기 등의 관리 〈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산안법 제111조, 제114조,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게시·교육·경고표시, 시행규칙 제84조 제3항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79조 휴게시설,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제448조 세척시설 등

■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사용작업(법 제58조제1항제3호)

● 보건평가의 평가항목·세부평가내용 구성(II)

보건평가의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작업표준(작업안전수칙, 작업절차서)의 적절성 현장의 작업환경(상태)과 작업방법(행동·절차)의 적절성 등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도급인가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7조 채광 및 조명, 제8조 온도, 제10조 작업장의 창문,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제21조 통로의 조명 제22조 통로의 설치, 제72조 후드, 제73조 덕트, 제74조 배풍기, 제75조 배기구, 제76조 배기의 처리, 제77조 전체환기장치, 제78조 환기장치의 가동, 제83조 가스 등의 발산억제조치, 제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 제85조 잔재물 등의 처리,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 예방,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 누출 방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 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453조 설비기준 등, 제454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제455조 배출액의 처리 (베릴륨작업에만 적용) 제471조 설비기준 제472조 아르코에 대한 조치, 제473조 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제474조 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도급인가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제469조 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제470조 보호복 등의 비치
4.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도급인가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459조 명칭 등의 게시, 제461조 용기 등 제463조 잠금장치 등, 제466조 누출 시 조치 〈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산안법 제111조, 제114조,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게시·교육·경고표시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급인가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79조 휴게시설,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제464조 목욕설비 등, 제465조 긴급 세척시설 등

■ 황산 · 불화수소 · 질산 · 염화수소 취급설비 개조 등 작업(법 제59조제1항)

●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세부평가내용 구성

보건평가의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작업표준(작업안전수칙, 작업절차서)의 적절성 현장의 작업환경(상태)과 작업방법(행동·절차)의 적절성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온·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7조 채광 및 조명, 제8조 온도, 제10조 작업장의 창문,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제21조 통로의 조명, 제22조 통로의 설치, 제42조 추락의 방지, 제43조 개구부 등 방호조치,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72조 후드, 제73조 덕트, 제74조 배풍기, 제75조 배기구, 제76조 배기의 처리, 제77조 전체환기장치, 제78조 환기장치의 가동, 제83조 가스 등의 발산억제조치, 제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 제85조 잔재물 등의 처리,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 예방, 제297조 부식성 액체 압송설비 제298조 공기 외의 가스사용 제한,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 누출 방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 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31조 작업장의 바닥, 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 제433조 누출의 방지조치, 제434조 경보설비 등 제435조 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등, 제620조 환기 등 제630조 불활성기체의 누출, 제631조 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등, 제624조 안전대 등, 제625조 대피용 기구 비치
4.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442조 명칭등의 게시,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44조 빈 용기 등의 관리 〈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산안법 제111조, 제114조,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게시·교육·경고표시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79조 휴게시설,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제448조 세척시설 등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

붙임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부분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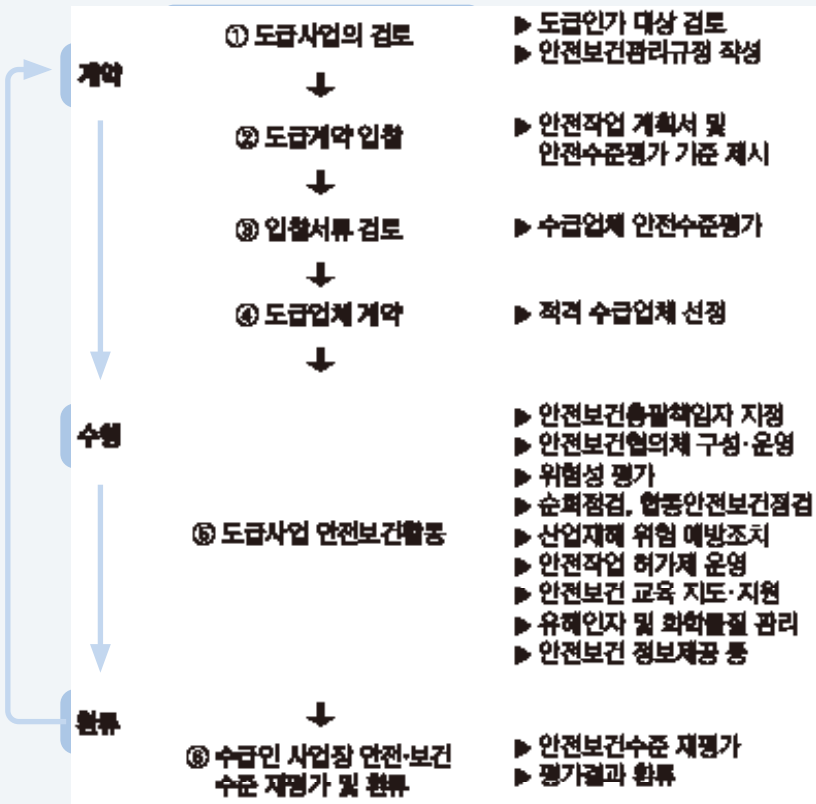


Ⅲ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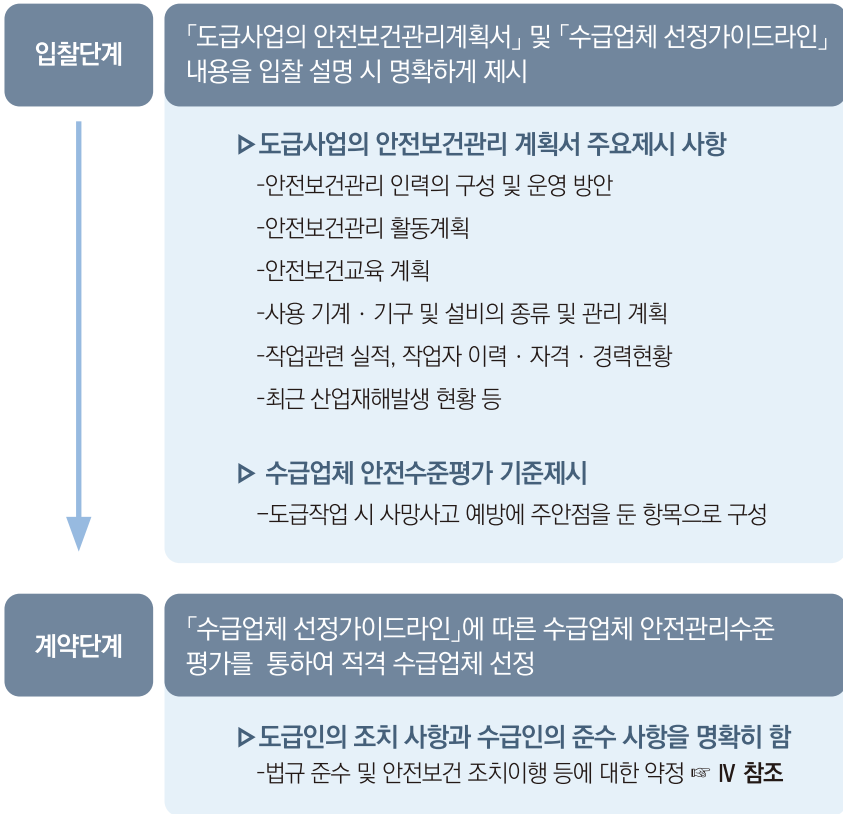
-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관련 활동상황을 요구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2.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안전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며, 본 내용은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를 위한 “예시”로 작성됨

① 평가항목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 수준평가 주요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2. 계획수립	▶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3. 구조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원청 / 하청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원청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 도급인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수준평가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 능력까지 포함한 종합평가방식을 고려

②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 기준 붙임1 참조

- 정량적 평가점수 부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등의 분야에 속한 항목별로 세부 평가기준 구비

● 도급작업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을 강조
-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 배점 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구조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10), 위험물질 및 설비(5),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3. 선정기준 및 환류

① 평가결과를 어떻게 적용하나?

●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의 4개 분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의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제외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②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포상 또는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평가를 통해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 사업장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

〈 사례 : 안전보건환경관리능력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 선정(S사) 〉

◎ 하청업체별 안전보건환경 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 에 해당하는 수급업체는 탈락

- 평가항목은 안전보건환경경영체계/이행성 평가 및 실적평가로 구성 (7개 분야, 23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시 가점 부여

●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을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 안전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

● 수급업체의 안전수준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원청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Ⅳ 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 안전보건 교육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 ①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① 도급인의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안전보건 점검

- ① 도급인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② 도급인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보건 정보제공

- ①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등 준수

- ①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

- ①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② 도급인의 사업주와 수급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안전보건 조치 이행

- 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

붙임 5

안전수준평가 세부기준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업장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5	
2. 계획수립	－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3. 구조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원청 / 하청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5	3	1

- ① 우수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음
 -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하청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② 보통 :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하청사업주의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 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위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5	1

- ① 우수
 - 원청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하청의 이행계획에는 원청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② 보통 : 원청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구조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하청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
- ② 보통 :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하청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원청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이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작업개시전임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작업에서 자체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수립되거나,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확인자 및 관리감독자의 현장배치가 없는 경우 작업중지 운영방안이 있는 경우

② 보통 :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하청업체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5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원청과 하청업체 및 하청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하청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 원청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 항목 또는 원청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를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를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를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 발생수준을 제외)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

발행일 2020년 4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전 화 044)202-7758

디자인 열림기획(주) 044)868-5055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